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
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·어업·임업·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,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20961호, 2025. 5. 27. 공포, 11. 28. 시행)됨에 따라, 농업·어업·임업 및 소금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하며, 재난지원금의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및 시설 복구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1. 11. ~ 11. 18.) 중

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주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소금생산업”을 “농업·어업·임업·소금생산업”으로, “소상공인(이하 “소상공인”이라 한다)”을 “소상공인(이하 “소상공인”이라 한다)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생계안정”을 “생계안정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주생계 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소금생산업”을 “농업·어업·임업·소금생산업”으로, “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”를 “사람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과 재해를 입은 사람의 세대에 속한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중 “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”을 “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자목(중전의 아목) 중 “사목까지에서”를 “아목까지에서”로 한다.

사.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

제5조제3항제1호 중 “바목까지”를 “사목까지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“사목까지에”를 “아목까지에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바목까지”를 “사목까지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바목까지에”를 각각 “사목까지에”로 한다.

별표 1 제1호 표 및 비고 외의 부분 중 “생계안정”을 “생계안정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1) 및 2) 외의 부분 중 “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비 지원”을 “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목 1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) 경영 안정 지원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	지원 100퍼센트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등을 참고하여 지원 금액을 정한다.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

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			
경영 안정 지원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	지원 100퍼센트	경영 안정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별표 1 제1호 비고 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비고 제2호 중 “위 표 다목 2)”를 “다목2)”로, “비고 제1호에 따른 위 표 다목1)의 생계 지원”을 “다목1)의 경영 안정 지원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 장 시설의 복 구			
1) 건축물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	가) 지원 30퍼센트 나) 융자 60퍼센트 다) 자기 부담 10퍼센트	시설의 복구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2) 기계·설비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	가) 지원 35퍼센트 나) 융자 55퍼센트 다) 자기 부담 10퍼센트	

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 중 “바목까지의”를 “사목까지의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제3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“주생계수단 등을 확인하여”를 “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을 확정 한 후”로 하고, 같은 란 제2호 중 “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”를 “강제징수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쪽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란 중 “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”을 “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혜택”으로 하고, 같은 쪽 개인정보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란 중 “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”를 “융자”로 하며, 같은 쪽 처리절

차란 중 “확정(주생계수단 확인 등)”을 “확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피해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의3제1항제1호 중 “바목까지”를 “사목까지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제3조(정의)	-----	
1. “주생계수단”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.			-----.	
		<삭 제>		
2. “재난지원금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, 부상을 당한 사람, 주택이나 <u>주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소금생산업</u> 에 재해를 입은 자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<u>소상공인(이하 “소상공인”이라 한다)</u> 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.		2.	-----	

		--	<u>농업·어업·임업·소금</u>	
			<u>생산업</u> -----	

		-----	<u>소상공인(이하 “소</u>	
			<u>상공인”이라 한다)</u> 및 「중소	
			<u>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</u>	
			<u>중소기업(이하 “중소기업”이</u>	
			<u>라 한다)</u> -----	
		--.		
3. ~ 9. (생략)		3. ~ 9. (현행과 같음)		
제4조(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)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		제4조(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		
준)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		준) ① -----		

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

가.·나. (생략)

다. 주생계 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
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

라.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

마.·바. (생략)

2.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

가. ~ 바. (생략)

<신설>

사. (생략)

아.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
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

-----.

1. ----- 생계안정 등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농업·어업·임업·소금
생산업-----
----- 사람에 대한
경영 안정 지원과 재해를
입은 사람의 세대에 속한

라. ----- 소상
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
경영 안정 지원

마.·바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
사.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
업장 시설의 복구

아. (현행 사목과 같음)

자. ----- 아목까지에서

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중앙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	----- ----- -----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국고의 지원 대상) ①·② (생략)	제5조(국고의 지원 대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·군·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·군·구(이하 이 항에서 “다른 시·군·구”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·군·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다른 시·군·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,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<u>바목까지</u>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목까지</u> <u>지</u>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2(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)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복구 및 입식 대상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 ① ·

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복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.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 · 군 · 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,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3. (생략)

제5조의2(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) ① -----

----- 아목까지

에 -----

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 ① 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사목까지 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④ (생략) 제9조(재난지원금의 지원 등)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<u>바목까지</u>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며,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<u>바목까지</u>에 해당하는 경우: 별표 3에 따른 금액 ② ~ ⑨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 제9조(재난지원금의 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사목까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<u>사목까지</u> ----- ----- ② ~ ⑨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5315